보도자료 2016. 10. 7.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자	사법지원심의관 김영현 (02-3480-1386)

법원 내 「과태료재판 연구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 마련

◆ 경과

- 2016. 7.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실제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중심으로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구성됨
- 연구반은 2016. 8.부터 2016. 9.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16. 10. 초순경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 마련
- 2016. 10. 7. 법관들 대상 내부 「과태료재판 커뮤니티」에 상세 자료 게시
- 같은 날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 절차에 관하여 대외 설명자료 동반 제공
- 「과태료재판 커뮤니티」 ⇨ 현재 과태료재판을 담당하고 있거나 과태료재판을 연구하는 법관 270명이 가입된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 향후 계획

- 연구반은 2016. 11.까지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을 포함하여, 과태료재판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
  - 특히,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의 과태료 부과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
- 연구반 안내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제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과태료재판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영하여, 2017년 상반기 실무편람 발간 등으로 이어질 예정
-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의 접수건수 등 추이를 면밀히 살펴, 「전국 과태료사건 재판장 간담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주요 내용

1 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재판의 준거법률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❶ 소속기관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 ❷ 관할 법원의 과태료재판 개시 ⇨ ❸ 약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 ❹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시 또는 약식재판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 ❺ (검사 또는 당사자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 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함

2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 관할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

  [⇨ 18개 지방법원 및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관할]

- (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 ⇨ (항고심) 지방법원 항고부 담당

3 약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심리 강화 도모

-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보완요구 적극 활용 [※ 보도자료 7면 참조]
- 검사와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실질적 보장
- 약식재판절차에서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를 확보하여 철저히 기록을 검토할 것임
- 그러나 부실한 심리자료만이 제출되고 통보보완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소속기관장 등 조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고자료 수집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청탁금지법」이 마련하고 있는 자료수집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

4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의 적절한 운용

- 약식재판절차의 심리강화를 전제로, 심문기일에서의 사실 탐지 및 증거조사 집중 실시로 기일 최소화
- 위반자(당사자)에 대한 충실한 절차 보장
- 신고자 보호에도 유념하여 절차 진행 도모

5 불복절차 정비

- ❶ 약식재판에 따른 과태료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❷ 정식재판에 따른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등 충실한 절차보장

[상세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의 과태료재판 준거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고 과태료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해 다른 법률(예컨대, 「비송사건절차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일반법

-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법상 또는 소송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 또는 기관・단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위 법 제2조 제1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지 않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시법주의 및 신법 우선의 원칙(제3조),[1]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제6조)[2], 고의・과실 필요(제7조),[3] 위법성의 착오(제8조)[4] 등 기존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비해 책임주의를 강화한 입법

---

1)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2)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재판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기본적 재판절차의 틀 유지

○ ❶ 소속기관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 ❷ 관할 법원의 과태료재판 개시

○ ❸ (약식재판을 하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 ❹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시 또는 약식재판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 ❺ (검사 또는 당사자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 통보 절차

위반 행위		위반행위 신고 및 소속기관에 통보		소속기관
	⇨	▶ 누구든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권익위원회, 조사기관은 **<u>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u>**	⇨	▶ 필요한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u>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위반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u>** ▶ **특정한 사유[5]가 있는 경우, 조사 없이 종결 가능**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3조, 제34조		청탁금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5) 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②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④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⑤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⑥ 그 밖에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35조, 제14조)

◎ 약식재판절차 회부기준 마련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약식재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의 예시

과태료 부과	▶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사자의 반증의 여지가 없는 때 ▶ 객관적으로 위반사실이 증명되고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가 강하게 추정되는 때
과태료 불처벌	▶ 과태료 부과 통보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 ▶ 위반사실을 전혀 특정할 수 없거나, 위반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이미 형사처벌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 의결이 있어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과태료 불처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행위 시 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4세 미만자 또는 심심상실자의 위반행위 등)

◎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보완요구 강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규정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1항)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연구반은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재판에서의 행정청을 "소속기관장"으로 해석함

○ 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

- 한편,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시점에 이를 때에는, 청탁금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반사실의 특정 및 위반사실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어야 함

-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그 위반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이름·연락처·주소, 위반행위의 일시·장소·내용, 청탁방지법의 적용법조 등을 포함한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행정청의 조사결과 및 관련 증빙서류(관계서류와 사진·영상 등 증거물 전부)를 첨부하여야 함

○ **법원은 필요 시 소속기관장에 대해 통보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위반자의 인적 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실의 요지

- 일시, 장소, 방법 특정
- 적용법조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여 통보한 이유

▶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전부 [아래는 예시임]

- 신고자, 위반자, 목격자 등 관련자 경위서
- 신고자, 위반자, 목격자 등 관련자 문답서 또는 면담 조사서
- 조사기관(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관계 서류
- 사진·영상,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 신고자, 위반자, 목격자 등 관련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 근거 및 회신서류 등
- 법 시행령 제3조, 제18조, 제29조에 따른 신고 서면 등 일체

◎ 청탁금지법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 관련

○ 법원에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사건이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유형을 상상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상 과태료액 부과는, 최대 3,000만 원 또는 수수금지 금품등의 5배액까지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매우 다양할 것이어서, 법관이 개별 사건에서 합당하게 정하여야 할 고도의 재판사항에 해당함

- 가능한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액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

○ **[1] 부정청탁 영역** ⇨ 부정청탁의 내용 및 횟수, 그 밖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정 기간 법률 시행 경과를 보아 마련함이 타당

○ **[2]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 영역** ⇨ 수수금지 금품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데, 2016. 11. 초순경 가중적 고려요소를 추출하여 제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